

행정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

- 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 나타난 수거명령 해태·지연에 따른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

Administrative Regulation Nonperformance and Government Liability

- Concerning the damages caused negligence and delay of the
order to take away germicide for humidifiers -

박 정 일* · 원 종 석**

Bak, Jeong-Il · Won, Jong-Seok

목 차

- I. 머리말
- II. 행정규제부작위와 위법성 판단
- III.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국가배상
- IV. 맺음말

국문초록

현대 행정의 특징 중 하나는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관여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적절한 규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국민 각자가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다.

논문접수일 : 2011. 12. 30

심사완료일 : 2012. 01. 21

게재확정일 : 2012. 01. 25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서해대학교 부동산컨설팅과 겸임교수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작위에 대한 규율' 못지않게 '부작위에 대한 규율'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즉 국가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일 경우 그와 관련된 국민이 받을 피해 위험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다수의 행정규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법 문구만을 그대로 본다면, 그 규제권 행사의 여부는 행정청에게 전적으로 결정의 여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제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할 위험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규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법원은 선례를 통하여 법령 등에 명시적인 규제권의 근거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국가의 규제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편, 오늘날은 사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국가의 적절한 규제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국가의 관리·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배상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가 필수적인 현대사회에서 앞으로 행정규제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경우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가습기 살균제, 행정규제부작위, 국가배상, 재량축소, 수거명령

1. 머리말

현대행정의 특징 중 하나로 국익을 위한 행정규제 외에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만큼 국민생활이 행정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행정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된 경우만이 아니라 본래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행사되

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현대행정에서는 ‘작위에 대한 규율’이 행정법의 중심과제였던 질서행정시대와 달리 ‘부작위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11월 11일 보건당국은 2011년 4월부터 사회의 관심을 끌어 온 임신부의 갑작스런 원인불명의 폐 손상으로 인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 주된 원인이 가습기 소독에 사용되는 가습기 살균제에 있다”는 확정 발표를 하였다.

이미 발표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에 대한 보도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으나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위험요인 추정’ 역학조사 결과발표로부터 동물흡입실험까지 약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야 “원인불명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다”라는 발표를 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 해당제품은 버젓이 시중에 유통이 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해당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왔다. 또한 정부는 위 발표와 동시에 문제가 된 동일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 일부에 대하여는 수거명령을 하였으나,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 회사에 대한 수거명령의 시기 적절성을 기초로 하여 행정규제 부작위의 특징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행정규제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기준과 행정구제수단으로써 국가배상제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해 본다.

II. 행정규제부작위와 위법성판단

1. 행정규제부작위

가. 정의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동법 제2조에서는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는 행정규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작위’의 구체적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¹⁾ 우리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명문으로 규정을 두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작위라 하여 매우 한정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에는 이와 같은 한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작위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

이에 대해 부작위란 사회통념상 행정청에게 기대하는 작위의무를 행정청이 불행사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회통념상 행정청에게 기대하는’이라는 의미를 법령에 규정된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주체가 무엇인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 일반인의 기대에 부합해야 하는 작위의무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³⁾

결국 ‘행정규제부작위’란 관할행정청이 행정객체의 일정한 활동에 대하여 진입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통제해 줄 것을 사회 통념상 국민 일반이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규제 의무를 불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⁴⁾

나. 부작위의 구체적 유형

공무원의 부작위에 관해서는 그 부작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공무원의 부

- 1)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부작위의 구체적 유형’에서 설명.
- 2) 천병태, “위법한 부작위와 국가배상 —考— 한·일 양국의 법리비교 —”,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12, 102면.
- 3) 김민호, “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성균관법학」 제6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137면.
- 4) 김민호, 위의 논문, 138면.

작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는가 혹은 단순히 반사적 이익을 침해받았는가 하는 점 등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부작위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본다면, 일본의 古崎慶長 판사는 부작위를 다음과 같이 두가지 형태로 분류한다.⁵⁾ 첫째는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작위의무에 주목하여 ① 법령 자체의 규정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작위의무가 일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 권한행사의 공무원의 재량이 주어진 경우, ③공무원의 작위권한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⁶⁾

둘째는 입법의 부작위, 행정의 부작위 및 사법의 부작위로 나누고, 행정의 부작위를 ① 국가정책의 부적절 ② 재량권 있는 권한의 불행사 ③ 행정지도의 부작위 ④ 식품과 약품의 피해 ⑤ 국가의 안전배려의무 등으로 세분하였다.

下山瑛二 교수는 행정권한의 불행사와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에 관한 사안을 정리하고 ①행정객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행정객체가 손해를 입는 경우의 부작위 ②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의 부작위 그리고 ③ 행정권한을 행사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주의의무위반 또는 손해방지의무위반으로서의 부작위 등을 제시한다.⁷⁾

2. 행정규제부작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가. 전통적 이론

부작위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

5) 古崎慶長, “公務員の不作爲と國家賠償法一條責任”, 『民商法雜誌』 78卷 臨時増刊號 - 法と權利(4) -, 1978, 207面.

6) 위 ①의 유형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공무원의 부작위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결국 행정규제부작위에 대하여 위법성 판단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②와 ③의 유형이다.

7) 下山瑛二, “行政權限の不行使と國家賠償”, 『行政法の爭點(新版)』, 『ジュリスト増刊』, 1990, 166 -167面.

급한 바대로 해야 할 법적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규제 부작용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부작용이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부작용이 위법으로 되는 것은 작위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작위의무가 필요하다.

행정청이 행정상의 규제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았던 관계로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행정청에게 있다. 즉 행정청의 부작용도 직무행위의 내용이 된다.⁸⁾ 그러나 종래의 우리나라 전통적 행정법학에서는 행정청의 부작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 있어 소극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반사적 이익론

행정상 규제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로부터 수익하는 개개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규제행정의 결과로 개개인이 받는 이익은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행정청이 적절한 권한행사를 태만히 하여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그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⁹⁾

그러나 오늘날은 종래의 반사적이익으로 보던 이익이 점차로 공권화 내지는 법적 이익화되고 있어, 공무원이 국민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¹⁰⁾ 그러므로 모든 행정규제의 결과 개인이 받는 이익이 전부 반사적 이익이라는 사고를 지양하고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판례도 국가배상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

8)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7, 509면; 박윤혼·정형근, 「최신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9, 599면;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0, 547면.

9) 천병태, 앞의 논문, 103면.

10) 박윤혼·정형근, 위의 책, 606면.

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국가배상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¹¹⁾

(2) 행정편의주의

국민이 행정청의 부작위를 위법이라 하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이 행정권한을 발동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 행정법학의 이론은 행정권한의 발동이 재량조항에 근거를 둘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법문상으로 기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도 행정청이 행정상의 규제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것인가의 여부는 오로지 공익의 관리자인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있는 것이지, 국민에게는 공권력의 발동을 구할 구체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행정청에는 행정권한을 발동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나 재량성을 수반한 제1차적 판단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판례는 법에 명시적 규제권한이 없다하더라도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즉, 조리에 의한 공무원의 개괄적 위험방지의무를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¹²⁾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

행정권한 불행사의 위법성을 논함에 있어 그 전제로서 당해권한을 정한 근거규정의 법률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행정법규에 있어서는 권한근거 규정상의 권한행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자체가 행정

1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1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 18520 판결.

권의 전문기술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는 먼저 행정권의 전문기술적 재량의 폭 그자체가 영으로 수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필요하다.¹³⁾

일찍이 W.Jellinek는 경찰재량에는 상한의 한계(Grenze des Übermaßes)와 하한의 한계(Untergrenze)가 있음을 주장하였다.¹⁴⁾ 전자는 경찰재량을 넘어서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후자는 그것을 하회하면 경찰의 해태(Untätigkeit)가 의무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즉 W.Jellinek가 말한 하한의 한계에서 재량의 0으로의 축소법리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¹⁵⁾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은 국가의 규제권한의 불행사와 위법성의 문제에 대하여 결말을 가져다 주었다.¹⁶⁾ 이와 같이 재량수축의 이론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지지됨으로써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성 부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재량이 수축하여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권한불행사의 재량이 위법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만큼 개개 구체적 사례에 따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¹⁷⁾

다. 위법성 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위법개념은 피해자 구제라는 견지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법이란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법익의 침해

- 13) 선재성, “행정의 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 위법성과 과실의 문제를 중심으로 -”, 「민사법연구」 제4집, 대한민사법학회, 1995, 134면.
- 14) 김종천, “어린이 미니컵 켈리 질식사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법리 고찰”, 「법학논문집」 제35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170면에서 재인용.
- 15)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1960년 8월 18일에 띠톱판결(Bandsäge-Urteil)을 통하여 행정개입청구권과 그것의 바탕이 된 재량축소법리에 관한 논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BVerGE 11, 95, 97).
- 16) 천병태, 앞의 논문, 106면.
- 17) 이에 대하여 ①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협의 존재, ② 행정측으로는 그 구체적 위협의 예견가능성과 결과 회피·방지의 가능성(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음이 예측되고, 그리고 권한을 행사하면 용이하게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예측될 것)이 있고 ③ 침해자측으로는 위험회피의 수단·가능성이 없고 또 규제권한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형상일 것과 그리고 ④ 발생한 피해가 사회적 요인에 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부담에 힘겨운 불측의 손해일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한다(三稿良士明, 不作爲にかかわる損害賠償, 現代行政法大系 6, 1983, 169면).

를 말하고, 그것은 원인행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법이 인용하지 않는 결과(손해)의 발생에서 그 위법성이 발견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배상책임에서의 위법의 개념을 법이 인용하지 아니하는 결과(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위법의 근거는 규제권의 불행사가 객관적 행위규범을 위반했다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지 않는 손해를 발생시킨 부적절한 공행정작용, 즉 '국가작용상의 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런 손해발생의 원인이 국가행정작용의 부적절한 행사 또는 불행사, 즉 국가작용상의 하자 때문이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면 이러한 국가작용의 하자는 위법이 되는 것이다.

기왕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손해가 사인간의 불법행위만으로 처리하기에는 배상능력, 피해자의 완전구제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국가배상제도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현대 행정에 있어서의 국가배상제도의 변화된 시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배상책임의 근거를 항고소송에서의 위법과 동일하게 이해하여 객관적 행위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 규제권한의 발동을 재량행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수축되어 더 이상 재량이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위반은 위법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논리보다는 손해의 전보를 국가배상제도의 기본적 이념으로 하고 그 배상책임의 근거를 국가의 공행정작용상의 부적절한 행사에서 발견하는 논리가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많은 예측불허의 국가배상청구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⁸⁾

III.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국가배상

1. 가습기 살균제 피해

18) 김민호, 앞의 논문, 143~145면.

가. 피해발생 원인

출산 전후 산모 등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미상의 폐질환에 대해 조사를 해온 정부가 2011년 11월 11일 위해성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에 대해 우선 수거 명령을 내리고 시중에 나온 나머지 가습기살균제들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3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동물흡입 실험결과, 2개 제품에서 호흡곤란 등 환자의 임상양상과 흡사한 결과 즉, 폐섬유화¹⁹⁾ 증상이 나왔고, 주성분으로 PHMG 파스페이트와 PGH²⁰⁾를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²¹⁾

현재 PHMG 파스페이트와 PGH는 비록 주성분은 아니나 방향제, 화장품, 샴푸, 물티슈 등 다양한 제품에 쓰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된 것은 물에 풀어서 폐로 장시간 흡입한 것이 원인이었다. 세계적으로 가습기에 살균제를 풀어서 쓰는 나라는 없다. 가습기를 씻을 때 살균제를 쓰기는 하지만 들이마시는 증기에 살균제를 푸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

가습기 살균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외품²²⁾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공산품²³⁾으로 판매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 분류돼 있

19) '폐섬유화'란 폐 조직이 서서히 굳는 증상을 말한다. 즉, 폐조직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이 발생해 흉터가 생기고 섬유화가 발생하는 질병이다. 흡연과 항우울제 복용,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치료에는 면역억제제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폐 이식 외에 정확한 치료방법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NEWSis, 미확인 바이러스 유발 '폐섬유화'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3847388>).

20) 폐손상 원인물질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PHMG와 PGH이다. 그동안 다른 살균성분에 비해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흡입시 독성은 확인되지 않았던 상태다. 현재 PHMG와 PGH 두가지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두성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흡입독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두 성분은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가습기 진동자 등을 통해 아주 미세한 입자로 쪼개졌을 때 그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뉴스엔,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실태 악화 '구제책 없는 정부', newsen@newsen.com, 검색일자: 2011.12.21).

21) 폴리뉴스, '가습기 살균제' 흡입취 "폐섬유화·호흡곤란" ...정부, 6개 제품 우선수거 명령, <http://polinews.co.kr/Sub/print.php?no-137605>(검색일자: 2011.12.23).

22) 이에 대한 자세한 범위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참조.

2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는 '공산품'에 대하여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

는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등록만 하면 판매할 수 있고 성분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동물흡입실험을 통해 수거명령을 내린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안전인증²⁴⁾ 마크를 받은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안전성을 감독해야 할 정부 기관이 ‘사람 잡는’ 제품에 안전인증을 해준 셈이다.

나. 피해자들의 이중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제조물책임법」²⁵⁾상 해당 업체에 소송을 낼 수도 있고 정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대다수의 업체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경우 실질적인 배상을 해 줄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결함이 있는 제품의 유통을 허용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 아직도 소극적인 자세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모임 측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판매해 피해를 확산시켰고²⁶⁾, 이는 정부의 관리 허술에

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산품의 사용 등에 있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위해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 2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제2조 제7호)이란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공산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적 지위’에 있는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판단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
- 25)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결함있는 제품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칭한다. 1960년대까지는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대등한 입장을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법상 과실책임법리가 적용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의 책임유형으로 이해한다(이종인, 불법행위법의 경제학, 한울, 2010, 203~204면).
- 26) 비록 문제가 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을 ‘흡입·섭취시 부상·사망초래’ 물질로 고시하고도 이 성분이

따른 것이므로 국가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손해배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슴기 살균제 흡입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 환자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질병코드 자체가 없고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도 안돼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폐 이식까지 받은 환자들은 1억원이 넘는 병원비와 한달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약물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2. 「제품안전기본법」상 제품에 대한 행정규제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²⁷⁾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²⁸⁾

동법은 제2조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하고, ...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념임을 천명하고 있다.

동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으로 첫째, ‘안전성 조사’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²⁹⁾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가슴기 살균제에 사용돼 국민들이 흡입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것은 독성물질은 환경부, 제품은 지식경제부,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각각 관리해 온 시스템 때문이었다(인터넷 한국일보, 정부 ‘흡입시 사망 초래 독성물질’ 고시하고도 가슴기 살균제로 사용 14년간 몰랐다, <http://news.hankooki.com/1page/society/201111/h201111111716291950.htm>, 검색일자: 2011.12.23).

27)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해당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공산품’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28) 법률 제10028호, 2010. 2. 4. 제정

29) 제품의 ‘결함’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과 관련된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기타의 표시를 하였다 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표시상의 결함’이다.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동일한 요건 하에서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제품의 수거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의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³⁰⁾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과 직접 해당 제품의 ‘강제수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³¹⁾

위 법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요약한다면, 동법은 위에서 언급한 ‘기본이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 등에 대해 제품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제품의 소비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 → 수거 등의 권고 → 수거 등의 명령 → 직접 수거 등의 단계적 절차를 밟아 감으로 하여 해당제품의 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개선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안전성을 위한 행정규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 문구를 살펴보면, ‘...할 수 있다.’의 형식으로 마치 행정규제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행정청에게 결정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품의 결함이 중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등에 현재 위해를 주고 있고, 그런 개연성이 예상되는 상황의 경우에는 행정규제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³²⁾ 이럼에도 불구하고

30)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제품 외부로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품결함은 제외한다)

31)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10조(제품의 수거 등의 권고 등), 11조(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등).

32) J. Isensee는 경찰법을 포함한 위험방지법상의 편의주의가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와 모순되지 않지만, 경찰은 자신의 재량을 보호의무에 합치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행정규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그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³³⁾

정부는 일차적으로 폐로 직접 흡입되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공산품으로 규제한 점, 인체에 직접 흡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제품에 표시를 했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점, 역학조사를 통하여 피해 사건에 대한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흡입실험을 통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적극적인 규제를 게을리 한 점, 문제가 된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거명령을 유보했으나,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나머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이 성분에 대해 그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³⁴⁾ 차후에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3. 규제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사례

가. 개요

오늘날 국가배상사건의 발생은 주로 사인간의 가해행위와 피해에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사인(특히 사기업)의 활동범위가 대폭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권한의 행사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³⁵⁾

즉 사인이 그의 활동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인간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을 조종하며, 재량의 영으로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김종천, 앞의 논문, 173면).

33) 동지판례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34) 2011. 12. 7일자 KBS 2TV 추적 60분 방송내용 중(다른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하는 MIT 성분에 대한 언급 내용)

35) 박규하, "행정청의 부작위와 권리구제", 「외법논집」 제13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47면.

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감독권한의 불행사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의 부작용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사건은 주로 이러한 경우에 생기며, 특히 소비자행정법·환경행정법 등에서 주로 거론된다. 규제부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의 사례로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 연방 환경보호 위원회(Environment Protection Agency)가 '유독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Warn)'를 부주의로 부작용한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보호위원회의 경고부작용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량면책의 법리³⁶⁾를 인용하여 소를 기각해 왔다. 그러나 1988년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을 복용하고 피해를 입은 아이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백신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Berkovitz v. U.S. Case³⁷⁾에서 법원은 식·의약품 감독부(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 허용에 앞서 당해 의약품이 안전한 데이터에 의해 처방 되었는가? 생산물에 대한 투약실험을 통하여 안전성은 검토하였는가? 검토결과가 각종 안전기준에 합치되는가? 등을 충분히 검토했을 경우에만 재량 면책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사건은 재량면책을 부정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³⁸⁾

나. 판례의 개관

(1) 우리나라

36) 미국 연방불법행위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많은 면책규정을 둬으로써 아직도 미국에 있어서의 국가의 배상책임을 상당히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법 §2680은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한 §1346(b)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연방공무원의 재량적 권한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그 남용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배제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일세, "한·미 국가배상제도의 비교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103~105면 참조.

37) Berkovitz v. U.S., 486 U.S.531(1988).

38) 김민호, 앞의 논문, 149면.

중전의 판례 중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정면에서 위법성의 문제로 판단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 중에 형성된 저지대에 물이 고여 형성된 웅덩이에 대하여 배수시설이나 위험방지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³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며 관리하는 임야에 무허가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주민에게 주택가에 들출한 자연암벽의 붕괴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⁴⁰⁾, 소방서직원이 위험물 보관자에게 그 보관이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할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⁴¹⁾, 해수욕을 개설한 군의 직원이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수욕객 익사사고가 발생한 경우⁴²⁾, 유람선사고에 있어 사고선박의 사고당시 상태로 보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선박의 수선, 사용 및 운항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하지 않은 경우⁴³⁾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등은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⁴⁴⁾

현재는 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작위의무는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 국가의 초법규적, 일차적 작위의무를 인정하여 그 불이행에 대한 직접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⁴⁵⁾도 있다. 즉, 공무원이 폭우로 차도·하수도가 침수되어 인근 건물의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됨에도 서울시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조치를 하거나 방재책임자에게 알리는 등의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있어, 법원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일본

39)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877 판결.

40)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341 판결.

4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8148 판결.

4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584 판결.

4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44) 선재성, 앞의 논문, 131면.

4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동지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에이즈양성판정의 불통지 사건관련).

일본최고재판소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서 사용개시일을 정하지 않고 종전의 토지의 사용을 금지한 관계로 해당 개인이 종전의 토지와 환지예정지를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안'에 대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게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위법한 부작위 때문에 해당 개인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시의 배상책임을 인용한 바 있다.⁴⁶⁾

또한 가네미 유정사건⁴⁷⁾에서 "식품위생법상의 권한불행사도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조리상 행정청은 자유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개개의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규제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 권한의 불행사는 단지 부당이라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작위의무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후생대신 등이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즉 '재량권의 소극적남용'이라고 할 현저한 불합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행사는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으로 된다"고 판시하였다.

IV. 맺음말

공익 또는 이것과 결부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규제는 적절한 시기에 행해져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적시적인 행정규제의 요구는 통치권 중 행정권을 행정부에게 위임한 주권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현재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품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들의 도입목적은 해당 제품의 복잡성, 전문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갖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과 제품 생산자의 이기적인 욕망을 조절하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법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려

46) 最判 1971. 11. 30. 民集 25卷 8號, 1389面.

47) 福岡地小倉地判 1978. 3. 10. 判例時報 881號 17面.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일반 국민은 해당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르고 해당 업체의 광고나 정부의 '품질인증'에 의존하여 무조건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는 해당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당초부터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제품이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않고 인증을 해 주었다면 당연히 정부가 국민의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인 국민은 해당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제조업체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즘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관리감독의 소홀의 문제를 삼아서 국가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배상책임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상책임 요건 인정에 있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법성인데, 행정청에게 규제권 행사의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본래적 사명을 근거로 삼아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의 일부 성분이 다른 물질과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해당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승인을 한 책임이 있다. 또한 이미 역학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망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개연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동물흡입실험을 통한 확정발표가 있을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에게 권고 형식으로 판매중지를 명하는 소극적인 규제로 인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책임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성분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문제로 인해, 해당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관련 모든 제품에 대해서까지 강한 행정규제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신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했어야 했다.

정부는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보건당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규제권 불행사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일깨워준 사건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리스크사회화 되어갈수록 정부의 보호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구제를 위한 노력을 벌여야 하며 해당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7.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0.
- 박윤혼·정형근, 「최신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9.
- 이종인, 「불법행위법의 경제학」, 한울, 2010.
- 김민호, “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성균관법학」 제6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 박규하, “행정청의 부작위와 권리구제”, 「외법논집」 제13집,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선재성, “행정의 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 위법성과 과실의 문제를 중심으로 -”, 「민사법연구」 제4집, 민사법학회, 1995.
- 김종천, “어린이 미니컵 젤리 질식사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법리 고찰”, 「법학논문집」 제35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이일세, “한·미 국가배상제도의 비교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 천병태, “「위법한 부작위와 국가배상」—考 - 한·일 양국의 법리비교 -”,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 古崎慶長, “公務員の不作爲と國家賠償法一條責任”, 「民商法雜誌」 78卷 臨時増

- 刊號 - 法と權利(4) -, 1978.
- 下山瑛二, “行政權限の不行使と國家賠償”, 「行政法の爭點(新版)」, ジュリスト増刊, 1990.
- 三稿良士明, 不作爲にかかわる損害賠償, 現代行政法大系 6, 1983.
- NEWSis, 미확인 바이러스 유발 ‘폐섬유화’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3847388>)
- 뉴스엔, 가슴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실태 악화 ‘구제책 없는 정부’, newsen@newsen.com
- 폴리뉴스, ‘가슴기 살균제’ 흡입취 “폐섬유화·호흡곤란”...정부, 6개 제품 우선 수거 명령, <http://polinews.co.kr/Sub/print.php?no-137605>
- 인터넷 한국일보, 정부 ‘흡입시 사망 초래 독성물질’ 고시하고도 가슴기 살균제로 사용 14년간 몰랐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h201111111716291950.htm>

[Abstract]

Administrative Regulation Nonperformance and Government Liability

- Concerning damages caused negligence and delay of the
order to take away germicide for humidifiers -

Bak, Jeong-Il

Wonkwang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Senior Researcher

Won, Jong-Seok

Sohae College Department of Real Estate Consulting Adjunct Professor

It can be said that one of the characteristics in modern Administration is

nation's active involvement in national lives. Nation's proper regulation is getting more necessary for citizens' safe lives in complicated modern society.

Moreover, not only regulation on performance but also regulation on nonperformance is very important. So, if the government doesn't regulate the case when nation's active involvement is needed, th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s, innocent citizens.

Today, more and more citizens are demanding reparation from the government when a private man violates another's rights and the government doesn't regulate the case properly. It is the main reason that the perpetrators can't make enough reparation when they have no much money.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essential because the government must protect citizens' lives and bodies.

Because of this, the number of cases that victims demand reparation from the government will be increasing continuously.

Key words : Germicide for Humidifiers, Administrative Regulation Nonperformance, Government Liability, Discretion Reduction, Removal Order